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4일 김봉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2.9.21.)에 따라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 또한 민원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 조항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 등을 추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안 제4조)
 -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 수수료의 반환
- 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제6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과 동일하게 수수료 개정 (별표2)

- 골프장업,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 1건 200,000원 → 1건 100,000원
- 골프장업,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 1건 60,000원 → 1건 30,000원
- 골프장업,스키장업 등록신청 : 1건 100,000원 → 1건 50,000원
- 골프장업,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40,000원 → 1건 20,000원
-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1건 100,000원 → 1건 50,000원
-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1건 40,000원 → 1건 20,000원
-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 1건 60,000원 → 1건 30,000원
-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20,000원 → 1건 10,000원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2.9.21.)에 따라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 조항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 등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에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을 추
가로 신설하고,

별표2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과 동일
하도록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